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51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151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6
제151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18
제151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28
제151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자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3
제152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15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5
제152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	47
제152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	49
제152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152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152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63
제1527호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조 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5호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우리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우수공무원 우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2)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3)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심의

- 1) 제1호 : 영 제10조제1항 제1~5호
- 2) 제2호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6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중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쉬우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 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 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 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 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 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 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

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

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통합지휘본부 → 통합지원본부

나. 용어 정의 추가(제2조제3~5호)

- ‘재난현장 수습·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 용어 정의 추가

다. 재난현장 대응단계 개정(제3조제3호) : 현장조치 → 긴급구조지원

라. 통합지원본부 의무 설치·운영 재난상황 간략화(제4조제3항)

- 8개 재난상황 열거 → 4개 재난상황으로 간략화(대규모 피해시)

마.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시 관계기관 통보사항 추가(제6조)

-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휘본부장 등 → 운영계획 등 세부사항

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규정(제7조)

사. 현장지휘관을 현장대응반장으로 변경, 현장책임관 신설(제9조)

- 현장책임관 : 관할 동장(현장대응반 가동 전 현장대응반장 임무대행)

아.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15조)

자. 통합지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21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7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6.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 3. 도시락 배달
- 4. 부식 지원
-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1. 아동급식 신청서
-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 3. 통장·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 3.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 4. 학부모 대표
 -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 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목적 및 대상자(제1조~제2조)

나. 급식지원 방법, 신청 절차(제3조~제5조)

다. 대상자 조사 실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제6조)

라.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제7조~제14조)

1) 위원회 기능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 급식업체 선정, 점검 및 위생관리 등

2) 위원회 구성 : 8명 이상 15명 이내

- 위 원 장 : 담당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마.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15조~제16조)

바. 시행규칙(제17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8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 라.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중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4.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
 - 3.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 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 2. 중구의회 의원

-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 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립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제4조)
- 다.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제5조)
- 라.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7조)
- 바.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수당 (제8조~제12조)
- 사. 시행규칙(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9호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질소산화물
 - 나. 황산화물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

으로 측정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 4.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 ③ 구청장은 국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
-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물품 지급
-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제안)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제9조 관련)

구 분		등 급 (µg/m ³)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 상 물 질	미세먼지(PM-10) (µg/m ³ /일)	0 ~ 30	31 ~ 80	81 ~ 150	151이상
	초미세먼지 (PM2.5, µg/m ³)	0 ~ 15	16 ~ 35	36 ~ 75	76이상
행 동 요 령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제9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 상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경보단계	구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 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 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 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 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단축 및 금지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 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 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 고 아.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 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p>지)</p> <p>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p> <p>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p> <p>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하 실외활동 금지 홍보</p> <p>자.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p> <p>사. 공사장의 작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p> <p>아. 그 밖에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취약계층” 용어의 정의 수정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추가 등과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변경(제1호)
-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내용 수정(제3조, 제4조, 제5조)
- 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추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준용)
- 라. 다른법령과의 관계 수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준용)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0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년 단위로”를 “3년 단위로”로 한다.

별표2를 아래와 같이 한다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 ℓ	280	
정 화 조	기 본	0.75 m ³ 까지	22,500	
	초 과	0.1 m ³ 당	2,200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①~②(생략)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대행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 제1항 관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부과기준</th> <th>부과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분 노</td> <td>18 ℓ</td> <td>230</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정화조</td> <td>기 본</td> <td>0.75㎡까지</td> <td>22,310</td> </tr> <tr> <td>초 과</td> <td>0.1㎡당</td> <td>1,610</td> </tr> <tr> <td>이전할증</td> <td>정화조청소요금</td> <td>7%</td> </tr> <tr> <td>자할증</td> <td>정화조청소요금</td> <td>5%</td> </tr> </tbody> </table>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18 ℓ	230		정화조	기 본	0.75㎡까지	22,310	초 과	0.1㎡당	1,610	이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자할증	정화조청소요금	5%	<p>제8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①~②(현행과같음) ③ ----- 3년 단위 로 -----</p> <p>[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 관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부과기준</th> <th>부과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분 노</td> <td>18 ℓ</td> <td>280</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정화조</td> <td>기 본</td> <td>0.75㎡까지</td> <td>22,500</td> </tr> <tr> <td>초 과</td> <td>0.1㎡당</td> <td>2,200</td> </tr> <tr> <td>이전할증</td> <td>정화조청소요금</td> <td>7%</td> </tr> <tr> <td>자할증</td> <td>정화조청소요금</td> <td>7%</td> </tr> </tbody> </table>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18 ℓ	280		정화조	기 본	0.75㎡까지	22,500	초 과	0.1㎡당	2,200	이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자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18 ℓ	230																																									
정화조	기 본	0.75㎡까지	22,310																																								
	초 과	0.1㎡당	1,610																																								
	이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자할증	정화조청소요금	5%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18 ℓ	280																																									
정화조	기 본	0.75㎡까지	22,500																																								
	초 과	0.1㎡당	2,200																																								
	이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자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하여 2011년도 이후 동결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기간 조정(제8조 제3항)

- 대행계약 기간 : 2년 ⇨ 3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 (제9조 별표2)

- 분뇨(18 l) 230원 ⇨ 280원

- 정화조 기본요금(0.75m³) 22,310원 ⇨ 22,500원

- 정화조 초과요금(0.1m³당) 1,610원 ⇨ 2,200원

- 지하할증 5% ⇨ 7%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1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시(2005.1.27.)시 기존의 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 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조례를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 기준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 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또는, 영 제4조에서 정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하수법」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과태료 및 지하수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제5조)

나.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영향조사대상 지역을 반지름 0.7킬로미터로 확대 적용(제3조)

다. 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지하수법」제17조 준용)

라.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삭제(「지하수법」제41조 준용)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4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을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반회계로 부터”를 “일반회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32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외”를 “용도 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한다.

제4조에 제2항,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 주차장특별회계 -----.</p>
<p>제3조(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u>각호</u>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u> 5. ~ 7. (생략) 8. <u>법 제24조의 2에 따른 과징금</u> 9. (생략) 10. <u>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u> 11. (생략) 	<p>제3조(세입) ----- 각 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일반회계로부터</u>----- 5. ~ 7. (현행과 같음) 8. <u>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u> 9. (현행과 같음) 10. <u>법 제32조</u>----- 11. (현행과 같음)
<p>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u>각호</u>의 <u>용도외</u>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후단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략) <p><신설></p> <p><신설></p>	<p>제4조(세출) ① ----- 용도외-----,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p> <p>③ 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일시차입)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5조(일시차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회계연도 -----.</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 회계로 대여 또는 전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여 구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세출) 제1항 후단 신설

-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다만 전출된 예산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시 전입시키도록 함

나. 제4조(세출) 제2항 신설

-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함

다. 기타 맞춤법 등 표기 정정(세부 내용 하단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5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용자 등”을 “용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등

별표 1 “비고”의 제8의2호 중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를 “전통시장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1. 담장허물기사업</p> <p>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p> <p>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 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p> <p>4.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 등</p>	<p>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p> <p>2. ----- -----</p> <p>3. ----- ----- -----</p> <p>4.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p> <p>5.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등</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 비 고- 1 ~ 8. (생략)</p> <p>8의2. 구청장은 <u>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u>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p>	<p>【별표1】 - 비 고- 1 ~ 8. (현행과 같음)</p> <p>8의2.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개인차량을 줄이고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율 70%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 추가
- 나.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가.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제2항
 -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 나.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1, 8의2)
 -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이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마일리지”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 건강생활 실천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의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건강 실태조사 및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건강증진사업) ① 구민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2. 주민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
3.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마일리지 운영

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마일리지) ①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일리를 부여하는 “중구 건강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 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 달성
- 2.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참여
- 3.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지도자, 건강소모임 활동 참여
-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

③ 가입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하되, 중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타시도 거주자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참여자의 누적된 마일리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지급하거나, 우리 구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 1.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 2.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 1. 각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
- 2. 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 건강모임 대표
-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국민건강증진 사업 소관부서장

6.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살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정책의 수립 시행 시에는 구민과 건강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나. 구민건강증진사업(제4조 ~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 기본목표 및 방향, 추진과제, 주민참여활성화 대책
- 구민건강증진사업 개요
 -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 주민참여형 구민건강 조직 운영
 -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마일리지 운영

다. 구민건강증진위원회(제7조 ~ 제11조)

-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7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지역보건법 제 10조” 를 “지역보건법 제 13조” 로, “ 보건지소운영 협의회” 를 “주민건강위원회” 로 한다.

제3조 ① 항의 “지역보건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를 “지역보건법 제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로 한다.

제4조를 ①항과 ②항으로 한다.

제4조 3호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 를 제4조 ①항 3호 “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동 지원” 으로 한다.

제4조 4호의 “보건지소운영위원회” 를 “주민건강위원회” 로 한다.

제4조에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3조 2항의 관할구역 외 관내 전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①항의 “주민건강위원회” 를 “주민건강위원회를” 로 한다.

제6조 ③중 “건강동아리를” 을 “건강소모임 등을” 으로 한다.

제7조 ①항의 “구성한다” 를 “ 구성하고 ” 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이 위촉 한다

제7조 중 ②항을 ③항으로 하고, 7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소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항을 ④항으로 하고, ④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지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주민건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④항을 ⑥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실비보상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표 창) 구청장은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은 삭제한다.

별표1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에 다산보건지소를 신설한다. 다산보건지소 위치는 서울 중구 동호로 15길 50으로 하고 다산보건지소 관할구역은 다산·필장층·을지로동으로 한다.
2. 약수보건지소 관할구역 “약수동”을 “약수·청구·동화동”으로 한다.
3. 황학보건지소 관할구역 “황학동”을 “황학·광희·신당·신당5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10조</u>」에 따라 -----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u>보건지소 운영협의회</u> 구성과 운영에 관한-----.</p> <p>제3조(설치 등) ①<u>지역보건법 제 10조</u>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4조(업무) 보건지소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p> <p>1. ~ 2. (생 략)</p> <p>3. <u>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u></p> <p>4. 기타 <u>보건지소운영위원회</u>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제6조(운영) ① 사업계획 및----- -----지소별로 <u>주민건강위원회</u> 설치 운영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13조</u>」에 따라 -----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u>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u> 구성과 운영에 관한-----.</p> <p>제3조(설치 등) ①<u>지역보건법 제 13조</u> 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4조(업무) ①<u>보건지소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u> (①,②항으로 분리)</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 증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동 지원</u></p> <p>4. 기타 <u>주민건강위원회</u>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p> <p>② <u>보건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3조 2항의 관할구역 외 관내 전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u></p> <p>제6조(운영) ① 사업계획 및----- -----지소별로 <u>주민건강위원회</u>를 설치 운영한다.</p>

② (생략)

③ -----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④ (생략)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①-----일반 거주민으로 구성
한다. <후단 신설>

<신설>

② (생략)

<개정안 ③항으로 변경>

③ (생략)

<개정안 ④항으로 변경,
후단실설>

<신설>

④ (생략)

<개정안 ⑥항으로 변경>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조모임인 건강소모임 등
을 적극 발굴하며-----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①-----일반 거주민으로 구성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이 위
촉한다.

② 보건소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현행②항과 같음)

④ (현행③항과 같음)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보건지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주
민건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⑥ (현행④항과 같음)

제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제8조(설치) (생 략)

제9조(구성) (생 략)

제10조(기능) (생 략)

제11조(회원의 임기) (생 략)

제12조(회장 등의 직무) (생 략)

제13조(회의) (생 략)

[별표 1]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신설>	<신설>	<신설>
약수 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92	약수동
황학 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난계로 11길 52	황학동

제9조 (표 창) 구청장은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제8조~제13조 삭 제>

[별표 1]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다산 보건지소	서울 중구 동호로 15길 50	다산·필·장충·을지로동
약수 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92	약수·청구·동화동
황학 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난계로 11길 52	황학·광희·신당·신당5동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조례 구체화를 통해 참여형 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확대된 주민참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산보건지소 관련 규정 신설, 관할구역 확장 (제3조) : 제 ②항 별표 1에 다산 보건지소 관련 규정 신설, 약수, 황학 보건지소 관할 구역 확장

나. 보건지소 업무 구체화 (제4조) :

- 제①항 3의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
- 제②항에 제3조 ②항의 관할구역 구체화 외 전동 확대 운영을 삽입

다. 용어 및 문구 변경 (제1조, 제4조, 제6조)

-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삭제, ‘주민건강위원회’삽입 (제1조, 제4조제①항)
- ‘건강동아리’를 ‘건강소모임’으로 변경 (제6조제③항)

라. 주민건강위원회 위촉관련 내용 추가(제7조)

- 제①항의 위원에 대한 위촉을 보건소장으로 함

마. 실비보상 등, 표창 내용 신설(제8조, 제9조)

바.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삭제(제 3장)